

제 안 설 명 서

[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]

영 주 시

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번	안 호	/54
--------	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

제출자 : 영주시장

1. 개정이유

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지방공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입주자격 및 계약 해제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증대하고 공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공단입주자격중 재정적인 능력은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건이므로 이를 삭제함.(안 제15조)
- 나. 입주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계약해제, 계약보증금 및 납입액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서상에 명시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함.(안 제19조)

3. 개정 조례(안)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(발췌) 1부.

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동조 제2항제2호중 “제1항제2호 및 제3호”를 “제1항제3호”로 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문대비표

【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】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입주자격) ①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. 다만, 공업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해 공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. 2. <u>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.</u> 3.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, 인가,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. <p>②지원업체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업계획이 입주업체의 사업지원에 적합할 것. 2. <u>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.</u> 	<p>제15조 ①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</p> <p>2. <삭 제></p> <p>3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</p> <p>1.</p> <p>.....</p> <p>2. <u>제1항 제3호에 해당할 것.</u></p>
<p>제19조(계약해제) ①시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상대방이 절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입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, 기타 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 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</p>	<p>제19조<삭 제></p>

관 련 법 령

[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

1. ~ 10.<생략>

11. “입주기업체”라 함은 산업단지안에 입주하여 제조업·지식산업·정보통신 산업·자원비축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.

12. ~ 15.<생략>

제42조(입주계약의 해지등)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2.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
3. 공장등의 준공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
4. 제38조제2항(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
5.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때

② ~ ④.<생략>

[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]

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① 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.

1.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

2. 삭제 [97·7·10]

3.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·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

② ~ ⑦<생략>

제54조(시정기간동) 법 제42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”은 6월로 한다.

[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]

제42조 (입주계약의 해지기간) ①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“정당한 사유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

2. 기타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

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“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”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.

의 안 검 토 보 고 서

1. 의 안

- 의안번호 : 제154호
- 의 안 명 : 영주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(안)개정조례(안)
- 해당부서 :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

2. 제안이유

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지방공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입주자격 및 계약해제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경쟁력을 증대하고 공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공단입주자격 중 재정적인 능력은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건으로 이를 삭제함. (안 제15조)
- 나. 입주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계약해제, 계약보증금 및 납입액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서상에 명시되는 사항으로 이를 삭제함. (안 제19조)

4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 바

- 안 제15조제1항은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입주자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안이며,
- 안 제19조는 입주계약서상에 명시가 가능한 계약해제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으로
- 경상북도 기획 11250-10050(2000. 4. 3.)호에 의해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적용지침에 의거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규제 조항을 정비하여, 지역내 공업단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,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

2000. 11.

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호 섭